

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44호
의결 년월일	2010. 9. 10 (제164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8. 24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개정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의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 문장의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함. (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6조까지)

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규칙의 제명 “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 의회의원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”으로 하고, “발급등”을 “발급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부천시 의회의원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신분증규격등”을 “신분증규격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천시 의회의장”을 “부천시의회의회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한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”을 “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따른“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신분증의 반납등”을 “신분증의 반납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	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부천시 의회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 규격,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부천시의회- 의원----- ----- -----발급 등-- -----.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부천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부천시의회 의원-----.
제3조 (신분증규격등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신분증규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 (신분증의 발급권자) 신분증은 부천시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	제4조(신분증의 발급권자) ----- --부천시의회의회장----- -----.
제5조 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.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 ----- -----따른----- -----. ② ----- -----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-----. ③ ----- ----- -----따른----- -----.
제6조 (신분증의 반납등) ① ~ ② (생략)	제6조(신분증의 반납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